##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366 발의연월일: 2020. 7. 24.

발 의 자:구자근・최형두・정희용

김용판 · 김영식 · 송언석

임이자 · 강기윤 · 조경태

김석기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을 선정하여 조세, 자금, 입지, 인력 등의 지원을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이 제정된 2014년 이후 2020년 5월 현재까지 국내로 복귀한 해외진출기업은 71개로 연평균 10개에 불과하며, 대기업 등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 투자 및 고용 등의 파급효과가 큰 점을 고려할 때 국내복귀기업의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내복귀기업 근로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자금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임대전용산업단지에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입주 시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 2조제3항 및 제13조제2항 신설).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근로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 6조의6에 따른 임대전용산업단지에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 입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 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자금지원) ①・② (생	제12조(자금지원) ①・② (현행과
략)	같음)
<u>&lt;신 설&gt;</u>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
	원대상 국내복귀기업 근로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
	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입지지원) (생 략)	제13조(입지지원) <u>①</u>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lt;신 설&gt;</u>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률」 제46조의6에 따른 임대전
	용산업단지에 지원대상 국내복
	귀기업이 입주하는 경우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
	대료를 지원할 수 있다.